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 무상사용 기간 만료('22.5.20)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 전환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책무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필요성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책임성 담보가 가능한 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시설 개요

- 1) 시설명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2) 위치 : 구미시 금오산로 5길 10-4 (1층~2층)
- 3) 시설규모 : 사용 연면적 373.8㎡(임차보증금 70,000천원)
- 4) 주요시설

층별	연면적	시설내용
1층	186.9㎡	프로그램실, 휴게실, 상담실, 버블샵, 사무실
2층	186.9㎡	공동작업장, 컴퓨터실, 주방 등

— < 구미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 > —

- ◆ (운영주체) 경북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장명희)
- ◆ (사업내용) 교육재활사업, 생활자립지원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적응교육, 지역사회 연계, 정보제공 및 상담
- ◆ (2022. 예산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204백만원 (도비18%, 시비 82%)
* 2021. 결산 262백만원(보조금195백만원, 자부담 67백만원)
- ◆ 시설 현황

센터장	설치년도	규모	정원/현원	종사자	비고
장명희 (비상근)	'07.8.8.	373.8㎡	20명/20명	시설장1, 복지사 4명, 조리원1	임차보증금 70백만원 (시 지원)

라.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간 * 2022. 5. ~ 2027. 5.

마. 위탁방법 : 위·수탁자 공개모집, 위탁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바. 위탁 소요예산 : 연간 204백만원 정도

* 2022년 기준금액, 도비 18% 시비 82%

사. 운영체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법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함.
(단, 시설장은 협의 가능)

아. 수탁자 선정 세부일정

- 공개모집 및 신청 접수 : 2022. 3월 ~ 4월
-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2. 4월 중
- 위 · 수탁 협약 체결 : 2022. 5월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계			259,443
사무비	인건비	○ 급여	132,953,600원×1식
		○ 상여금	13,309,000원×1식
		○ 제수당	10,813,000원×1식
		○ 퇴직금	12,939,000원×1식
		○ 사회보험부담금	13,779,000원×1식
		○ 기타후생경비	3,460,000원×1식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800,000원×1식
		○ 직책보조비	6,000,000원×1식
		○ 회의비	1,320,000원×1식
	운영비	○ 여비	1,000,000원×1식
		○ 수용비 및 수수료	5,978,400원×1식
		○ 공공요금	6,614,000원×1식
		○ 제세공과금	4,340,000원×1식
		○ 차량비	3,984,000원×1식
재산 조성비	시설비	○ 시설임차료	14,000,000원×1식
		○ 자산취득비	600,000원×1식
		○ 시설장비유지비	800,000원×1식
사업비	사업비	○ 생활자립지원	5,269,000원×1식
		○ 직업자립지원	7,470,000원×1식
		○ 역량강화/권익옹호	5,037,000원×1식
		○ 건강증진	160,000원×1식
		○ 심리정서지원	1,680,000원×1식
		○ 사회교육	473,000원×1식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4,766,000원×1식
		○ 조사연구	798,000원×1식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1,100,000원×1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입	○ 자부담 (법인 전입금 등)	55,310	55,310	55,310	55,310	221,240
	○ 민간위탁금 (운영비 등)	204,133	204,133	204,133	204,133	816,532
	소계(a)	259,443	259,443	259,443	259,443	1,037,772
세출	○ 자부담 (법인 전입금 등)	55,310	55,310	55,310	55,310	221,240
	○ 민간위탁금 (운영비 등)	204,133	204,133	204,133	204,133	816,532
	소계(b)	259,443	259,443	259,443	259,443	1,037,772
□ 총 비용(a-b)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도 비		32,248	32,248	32,248	32,248	128,992
시 비		171,885	171,885	171,885	171,885	687,540
자부담		55,310	55,310	55,310	55,310	221,240
합 계		259,443	259,443	259,443	259,443	1,037,772

5. 부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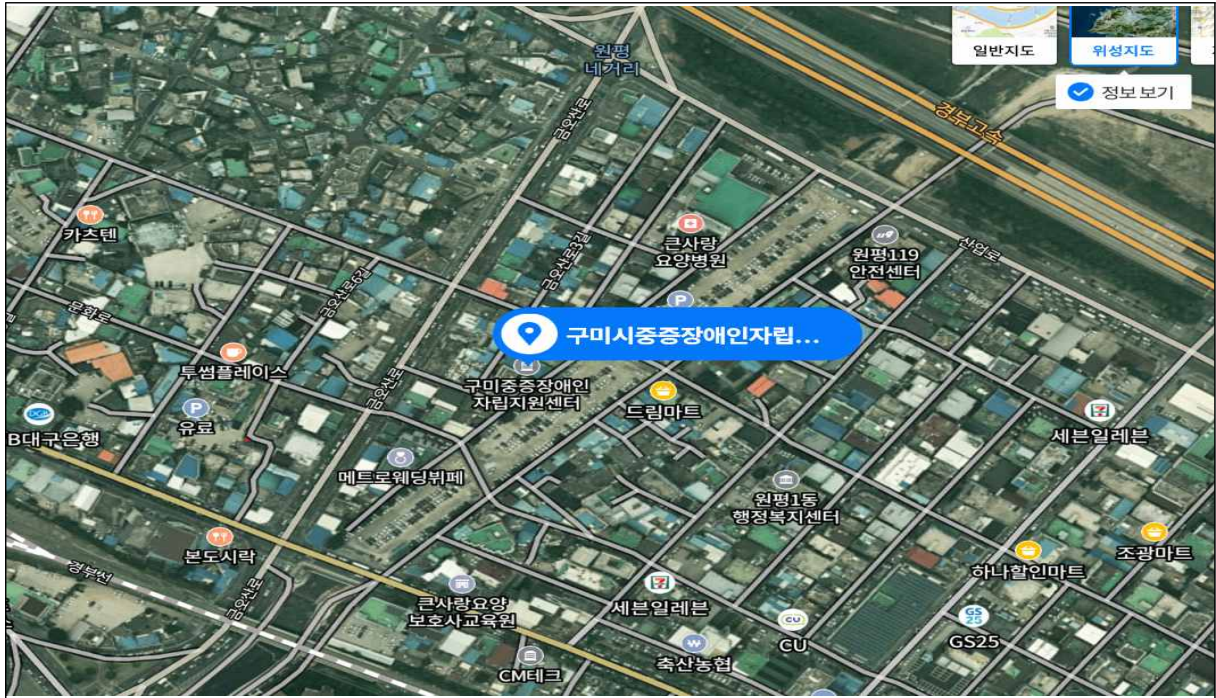
- 현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원 중이며 위탁 후 예산과목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예정임.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계 안정래(☎5182)

사진대지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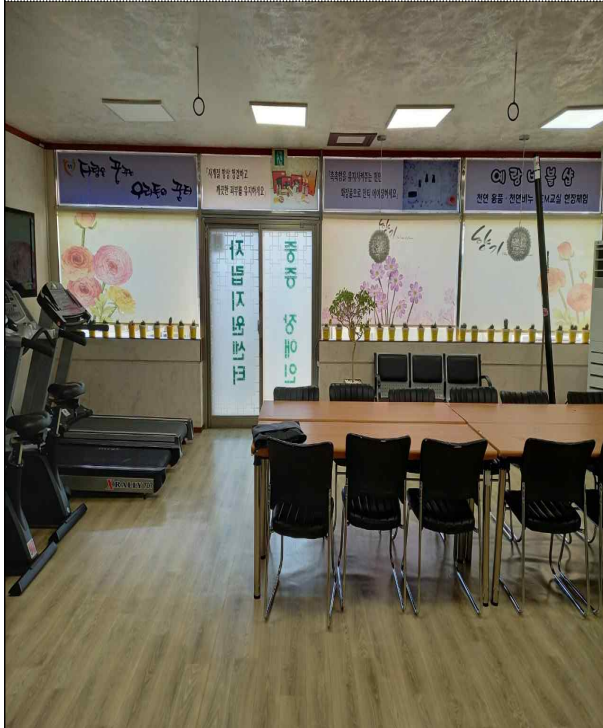


□ 건물 입구



□ 실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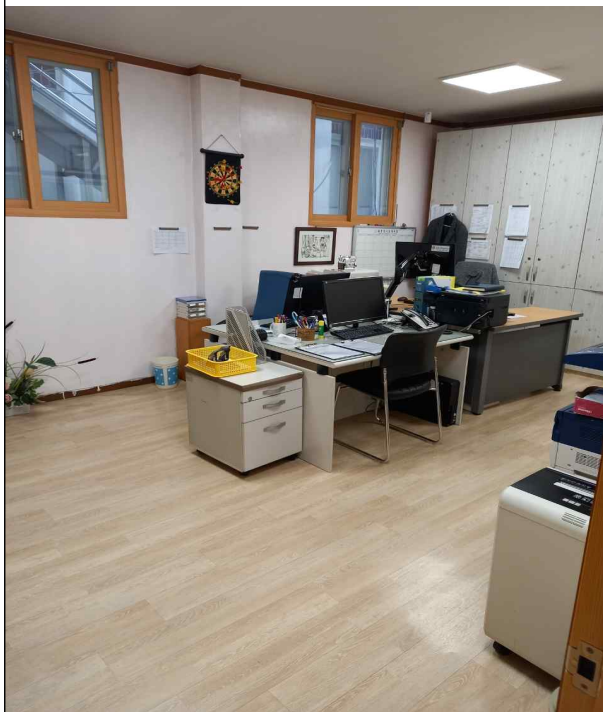
지상 1층 프로그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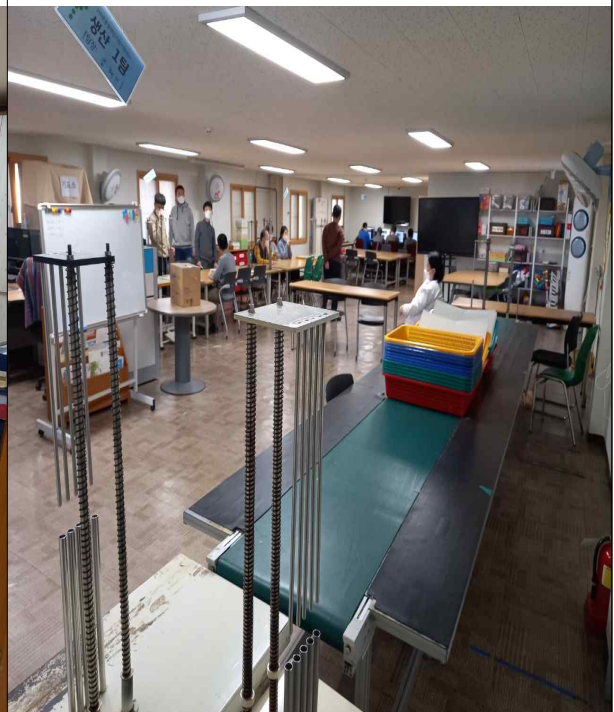
지상 1층 프로그램실(예랑버블샵)



지상 1층 사무실



지상 2층 공동작업장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희
	담 당	박 용 자
	담 당 자	안 정 래 (480-5182)